

의안번호	2202428
의 퇴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4. 12. 3.
추계번호	24A2467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장관이 초광역권¹⁾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관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200만원(연평균 67백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154	—	—	—	—	154	154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25	25	25	25	25	100	25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	58	—	—	—	—	58	58
합계	237	25	25	25	25	312	67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초광역권의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재량규정
2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위원회)	- 대통령 소속으로 초광역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이하 ‘초광역권 위원회’)를 둔 -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5	안 제9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0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이하 ‘지원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미래혁신산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2조 (미래혁신산업 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혁신산업 위원회를 둔	의무규정
8	안 제14조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국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관련 기반시설을 증설 또는 설치하는 기업 또는 초광역권에 대하여 각 호의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5조 (기업 지방이전)	-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 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6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7조 (교육기관 지방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교육기관이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관련 시설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0조 (자금 지원 등)	-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설비투자, 공장 신·증설, 경영혁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보조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1조 (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2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혁신산업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3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4조 (미래혁신산업 센터의 설립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래혁신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25조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를 자체 육성하고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18	안 제26조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교육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의무규정
		교육부장관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을 말한다) 등을 신설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8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 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29조 (초광역권 미래 혁신산업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지원)	-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권역 내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생산기술, 기업경영 등 고부가가치 우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지원을 해야 함	의무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를 권역 내 정착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30조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 거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무상임대주택 공급,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과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32조 (초광역권 미래 혁신산업 인재 고용지원)	- 정부는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분야의 청년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사업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33조 (초광역권 생활인 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 원)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교통·복지·문화·의료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지원·관리·투자를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래혁신산업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자녀 보육, 교육, 통합돌봄, 방과후 활동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지원해야 함	의무규정
24	안 제34조 (초광역 단위 문화·관광 육성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 번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추계 (시행계획 수립은 추가재정소요 ×)
2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안 제7조(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	추계
4	안 제9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추계 (시행계획 수립은 추가재정소요 ×)
5	안 제10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6	안 제12조(미래혁신산업 위원회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위원회 설치규모를 특정하기 곤란
7	안 제25조 (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행 사업 존재(추가 재정소요 ×) - 교육부 소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따라 수립 중
8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조항 - 제정안 시행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부재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9	안 제14조 (초광역 미래혁신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0	안 제15조(기업 지방이전)		
11	안 제16조(공공기관 지방이전)		
12	안 제17조(교육기관지방이전)	×	
13	안 제20조(자금 지원 등)	×	
14	안 제21조(창업지원)		
15	안 제22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16	안 제23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17	안 제24조(미래혁신산업센터의 설립 등)	×	
18	안 제26조(미래혁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19	안 제2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20	안 제29조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우수 인력 소득지원)		
21	안 제30조(미래혁신산업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등)	×	
22	안 제32조(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인재 고용지원)		
23	안 제33조 (초광역권 생활인프라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지원)		
24	안 제34조(초광역 단위 문화·관광 육성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한 성격의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소요된 평균 예산을 준용함
 - 또한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은 제정안 부칙에도 불구하고 법안 시행 첫해에 수립이 실시될 것으로 가정
 - 그 외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등은 추가 재정소요 없이 예산수행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할 것으로 전제
- 안 제7조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는 전체 위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며, 그 외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민간 위촉위원의 수는 절반 수준인 25명이 될 것으로 가정함
 -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참석과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등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종합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 단위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54백만원으로 추계됨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감안하여 2026년 단년도 기준 비용이 발생하며, 종합계획 수립시 유사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된 평균 비용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

[표 2] 최근 초광역권 관련 종합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초광역협력 연계방안	지방시대위원회	2021	49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2022	97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 ¹⁾	행정안전부	2022	327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²⁾	경기도	2023	144
평균			154

주 1)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8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계획

2)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계획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3]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154	-	-	-	-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행계획 수립)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관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수행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할 것으로 전제

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대통령 소속의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 으로 추계됨
- (구성 및 횟수)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25인으로 가정하고,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총 연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함
 - (단가) 민간위원의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전제함
 - (연간 추가재정소요) 민간위원 25인 × 25만원 × 연 4회 = 2,500만원

[표 4]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25	25	25	25	25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8백만원으로 추계됨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감안하여 2026년 단년도 기준 비용이 발생하며, 유사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평균 비용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함

[표 5] 최근 미래혁신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시기	금액
충북 마이스(MICE)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	2022	77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2024	50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광주광역시	2020	46
평균			58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6]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	58	-	-	-	-	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행계획 수립)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예산수행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소속으로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안 제5조)	154	—	—	—	—	154
초광역권 자생적 경제생태계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25	25	25	25	25	100
초광역권 미래혁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	58	—	—	—	—	58
합계	237	25	25	25	25	3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nabo.go.kr